웹 접근성 품질인증 표준심사 지침

2022.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 차

제1장.	개요	3
제2장.	심사 대상 및 제외 등	3
제3장.	심사 대상 사이트의 페이지 산정 기준	6
제4장.	심사 종류(신규, 갱신, 사후 점검)	7
제5장.	심사 절차 10	O
제6장.	심사 방법 및 환경 1	1
제7장.	인증심사 기준 1!	5

제1장 개요

1. 웹 접근성 품질인증제도 개요

-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한 사이트에 대해 품질을 인증 하고 인증마크를 부여
- 관련 법령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웹 접근성 품질 인증기관을 통해 심사 및 인증
 - *「지능정보화기본법」제47조, 제48조 등

제2장 심사 대상 및 제외 등

1. 심사 대상 범위 기준

- 하나의 웹 사이트는 대메뉴(GNB : Global Navigation Bar)를 공유하는 영역 또는 동일한 사이트명(로고 등)을 유지하고 있는 영역으로 구분
- (주요 목적 및 핵심 서비스 등) 주요 목적 및 핵심 서비스*, 콘텐츠 등은 심사 시 필수 대상이며, 제외될 수 없음. 또한 진행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필수로 심사하여야 함
 - *[예시] 금융(송금, 이체 등), 공공서비스(간편인증 등), 쇼핑(회원가입, 결제, 구매 등)
- (외부 서비스, 콘텐츠 등) 웹 사이트 내에 포함되어 있는 외부 서비스 및 콘텐츠도 웹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구분이 불가하므로 모두 심사 대상에 포함됨
- 공동인증, 각종 인증(휴대폰, 신용카드 등), 통합로그인, 국민신문고, 새올 행정시스템 등에서 제공되는 제3자 제공 콘텐츠 등이 해당되며, 링크로 연결되는 단순한 외부 사이트는 해당되지 않음
- 주요 목적 및 핵심 서비스, 콘텐츠에 해당되는 외부 콘텐츠는 제공 주체와 관계없이 심사 범위에서 예외 될 수 없음

* (예시) 쇼핑몰의 결제모듈, 보험이나 전자정부의 증명서 출력 솔루션, 이러닝의 교육 동영상, 병원이나 박물관의 예약 솔루션 등

심사 대상(O)	심사 대상 (X)
- 대메뉴 공유 영역, 동일한 사이트명 유지하는 영역 - 외부 서비스, 콘텐츠 등도 모두 심사 대상	단순 링크로 연결되는 외부 사이트는 해당되지
- 내.외부 상관없이 주요목적 핵심서비스, 콘텐츠 등은 심사 필수	않음

- (웹 애플리케이션, 솔루션 등) 웹 애플리케이션 또는 솔루션(S/W) 에 의한 기능들도 모두 심사 대상에 포함
 - E-book, E-learning, 좌석 및 티켓 예약시스템, 증명서 발급, 문서 출력(인쇄), 공인인증서 모듈 등
- (상용 소프트웨어) 상용 소프트웨어의 경우 접근성이 확보된 제품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동등한 정보, 기능을 대체콘텐츠 또는 대체 수단으로 제공해야함
- o (공통영역) 다수의 별도 사이트에 대한 인트로 페이지, 통합로그인, 검색서비스 등은 공통영역이라 하더라도 각 사이트마다 심사

2. 심사 대상 범위 제외 (별도사이트 등)

- 대메뉴가 새롭게 구성되고 해당 영역과 콘텐츠 및 서비스가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경우* 별도 사이트로 구분
 - 1) 별도 대메뉴를 가지면서 기존 사이트와 독립적인 콘텐츠가 제공되는 경우
 - 2) 별도 사이트 미만의 규모는 인증심사 대상이 될 수 없음 (별도로 구성된 대메뉴 및 독립적인 기능을 갖는 별도 사이트 는 인증의 최소 단위)
 - 3) 외국어 사이트의 경우 언어별로 별도 사이트에 해당

(사용자 제작 콘텐츠(UCC)) 사용자 게시물, 멀티미디어 등 UCC는 콘텐츠를 입력 시에 접근성 준수 기능 제공 또는 사전안내 제공을 전제로 심사 제외 가능

업무구분 업무센택▼ ○ 의미지명 ○ 설명 이미지정부	이미지에 대한 대체택스트를 제공하십시오. 이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작성해주십시오. 첨부파일
O 설명 이미지정부	이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작성해주십시오
어미지정부	
	첨부파일
) 게시판의 자막 제공 수단 동영상등록 업무구분 업무선택▼ 지목 당영상에 나오는 내용을 모두 작	

3. 필수 심사 대상 기준

- 웹 사이트의 주요 목적, 핵심 서비스, 콘텐츠, 기능 등은 심사 시 필수 대상으로 제외될 수 없으며, 진행하는 절차 및 과정 등 모든 일련의 과정들의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함
- 웹 사이트 방문 사용자가 빈번히 이용하는 서비스, 콘텐츠 등
- 웹 사이트의 핵심서비스는 모두 접근성이 가능해야 인증 가능

(예시)
(1) 로그인 및 회원가입 등
(2) 전자서명(간편인증, 공동인증) 등
(3) 예약, 신청, 발급, 중명서 등
(4) 결제, 이체 등

4. 심사 대상 제한 사이트

- ㅇ 미풍양속 및 사회질서 위배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0 웹 사이트가 아닌 소프트웨어는 단독 신청 불가
- ※ (예시) 플랫폼, CMS(Contents Management System), 그룹웨어, 이메일
 시스템,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결제모듈, 공인인증 솔루션, 본인 확인 인증 모듈 등
- 법령에 의해 현장심사가 필요함에도 현장심사 진행을 할 수 없는조건에 해당될 경우 신청 제한

제3장 심사 대상 사이트의 페이지 산정 기준

1. 페이지 산정 기준

- o URL주소를 기본으로 1페이지로 산정
- 동적페이지, 레이어팝업 등의 콘텐츠영역은 원칙상 웹페이지 본문(이하 본문)과 함께 1페이지로 산정하나, 본문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2페이지로 산정
 - 예1) 주식, 중계 정보 등 실시간으로 콘텐츠가 변경되는 페이지의 경우
 - → 일부 영역이 변하는 페이지는 1페이지로 산정하되 본문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2페이지로 산정한다.
 - 예2) 하나의 페이지 안에서 다수의 탭 메뉴를 제공하는 경우
 - → 일부영역에 적용된 탭메뉴 콘텐츠는 본문과 함께 1페이지로 산정 하나 본문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2페이지로 산정
 - 예3) 새창 또는 레이어 팝업 형태로 콘텐츠나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 → 일부 영역인 경우는 본문과 함께 1페이지로 산정하나 본문 대부분 차지하는 경우 2페이지로 산정

- → 도로명 주소 입력, 회원가입 등 단계별 기능이 제공되는 경우 2페이지로 산정
- 예4) 검색 조건 입력에 따른 통합검색 결과 목록은 1페이지로 산정
- ㅇ 게시판의 경우 목록, 내용, 쓰기를 각 1페이지로 산정
 - 예1) 공지사항, 보도자료 게시판 등과 같이 사용자가 입력할 수 없는 게시판은 2페이지로 산정(목록, 내용)
 - 예2) 자유게시판, 칭찬게시판과 같이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는 게시판은 3페이지로 산정(목록, 내용, 쓰기)
 - 예3) XML 문서에 다양한 XSL(스타일)을 적용하는 전자문서 등은 일반 게시판과 동일하게 적용

제4장 심사 종류

1. 신규 심사

- ㅇ 다음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 심사로 진행
- (1)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이 지난 후 신청한 경우
- (3)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신청하였더라도 기존 서비스 및 콘텐츠, 기능 등이 상당히 변경된 경우
- (4) 갱신 심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2. 갱신 심사

- ㅇ 다음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갱신 심사로 진행
- (1)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신청

- (2) 주요 서비스 및 콘텐츠, 기능 등이 상당한 변화가 없는 경우
 - ※ 갱신심사는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신청 후에는 만료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하며, 불가한 경우 신규 심사로 자동 전환됨
 - ※ 갱신심사 완료일과 상관없이 유효기간은 기존 인증 만료일 다음 날부터 산정함

3. 사후 점검 심사

인증 후 6개월 이내 웹사이트 변동 및 웹 접근성 수준을 사후 점검
 〈웹사이트 변동률 결과에 따른 심사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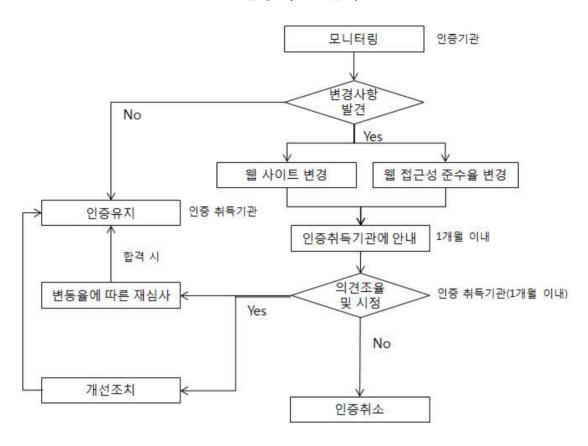
사이트 변동률	심사전환	인증유효기간	비고
20% 이하	모니터링으로 수정 안내	기존 인증기간 유지	무료
20% 초과 — 50% 이하	갱신심사로 전환	갱신심사 인증일로부터 1년	유료
50% 초과	신규심사로 전환	신규심사 인증일로부터 1년	유료

- ※ 변동률 = 인증 후 변경 페이지 수 / 인증 당시 심사 페이지 수
- 이 인증기관은 사후 점검 심사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있으며,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음

4. 인증 취소

- 만료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마크 유효기간 내 인증마크
 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인증마크를 부착하여 홍보할 수 없음
- ㅇ 기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음
- 허위 서류 제출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인증 범위, 유효기간의 허위 표시 및 인증서의 오용
- 인증취득 후 신청인이 인증을 유지할 수 없다고 통보하는 경우

〈인증취소 절차〉



제5장 심사 절차

※ 주요 절차 및 심사 방법은 동일하게 진행하되, 접수방식, 수수료, 심사기간 등 세부 사항은 인증기관별로 다를 수 있음

1. 접수	웹 접근성 품질인증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신규신청 및 갱신신청 구분 신청신청 사이트 담당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동의하에 대리 신청
2. 서면심사	 신청서 및 접근성 기준 충족 증명서류 등 제출 서류 검토 후 최종 접수 여부 결정 허위 기제, 정보 누락 등이 있는 경우 신청 반려 서면심사 결과가 이상 없으면 접수완료 안내 및 수수료 납부
3. 기술심사	 수수료 납부가 완료되면 기술심사 진행 전문가심사, 사용자심사로 진행 1차 심사 후 경미한 오류로 불합격 시 수정/보완 기회가 부여되며 수정/보완후 2차 심사 진행 ※ 2차 심사 진행시 1차 심사 페이지의 20%이상 변경하여 심사 가능 1차 심사 또는 2차 심사에서 합격 시 인증 절차 진행 ※ 전문가심사, 사용자심사 모두 합격해야 함
4. 인증	 기술심사 합격시 인증 절차 진행 인증일 확정 및 인증 통보 인증마크 및 인증서 부여 ※ 인증 유효 기간 1년, 인증마크는 심사 받은 사이트만 부착

제6장 심사 방법 및 환경

□ 서면심사

- 이 심사 신청을 위해 제출한 접근성 기준 충족 증명서류와 신청 서류를 확인
 - 심사를 위해 필요한 테스트 계정 및 테스트 데이터 등 필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신청 제한
 - 외국어 사이트, 전문 사이트의 경우 추가 자료 제출 요청하고 제공 하지 않는 경우 신청 제한

□ 기술싞사

- ㅇ 전문가심사
- 웹접근성 준수 여부를 기술적으로 평가하는 심사, 신규심사의 경우 3인 이상, 갱신심사의 경우 1인 이상

① 전문가 심사 페이지 규모 산정

구분	전문가심사 샘플 페이지 수	비고
신 규	2.5× √전체페이지수 이상 권장	▶ 전문가심시는 전체페이지 수에 따라 각 샘플 페이지 수
갱 신	신규의 50% 이상 권장	공식으로 계산 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전문가 심사 페이지 규모는 웹사이트 특성 및 유형에 따라 일부 조정할 수 있음

② 샘플링 페이지 선정 기준

- 심사 페이지 선정시 아래 '심사 페이지 선정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가입, 뱅킹, 조회, 검색, 게시물 작성, 서비스 가입 등과 같이 일련의 과정이 필요한 콘텐츠는 단계별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급적 선정 진행

〈심사 페이지 선정 우선순위 대상〉

우선순위	세부유형
1. 메인페이지	▶ 주 메뉴가 있는 메인 페이지 예) 도입부 페이지(인트로)가 아닌 GNB가 있는 메인 페이지
2. 로그인 및 회원 가입	▶ 로그인 페이지▶ 회원 가입 단계별 페이지▶ 회원 정보변경 단계별 페이지
3. 통합검색 및 사이트 맵 (내비게이션 지원 페이지)	▶ 사이트 내 통합 검색 및 사이트 맵▶ 기타 사용자 내비게이션 지원 기능 또는 콘텐츠 페이지
4. 목적 서비스(기능)	▶ 해당 사이트의 주요 목적 서비스(기능) 전체 과정 페이지예) 금융 사이트의 조회, 이체, 펀드, 대출, 보험, 공과금 등주요 대표 핵심 서비스의 과정 전체, 쇼핑 사이트의 상품상세, 주문, 결제 과정 전체, 전자정부 사이트의 민원 신청 및 발급과정 전체
5. 안내 및 정보 제공	▶ 해당 사이트만의 안내 및 정보 페이지예) 기관 소개, 서비스 안내, 보험 약관, 공지사항, 공고 등
6. 자료 제공	▶ 해당 사이트만의 자료 제공 페이지 예) 사진 게시판, 파일 게시판 등
7. 문제 해결 및 소통	▶ 사이트 이용 방법 안내, 문제 해결 및 소통 방법 제공 페이지 예) 웹 접근성 안내, 이메일 문의, 민원 또는 소통 목적 게시판, 직원 및 담당자 연락처 페이지, 고객센터 전화 및 위치 안내 페이지
8. 다양한 콘텐츠 및 템플릿	▶ 기타 상위 우선순위와 중복되지 않는 다양한 콘텐츠 및 템플릿 페이지

ㅇ 사용자심사

- 실제 사용자가 정해진 시간 내에 과업을 수행가능한지 여부를 평가 하는 심사
- 신규 심사는 3인 이상(전맹·저시력, 상지·뇌병변 반드시 포함), 갱신 심사는 1인 이상(전맹 등)

① 심사 과업 수 산정 기준

구 분	사용자심사 샘플 과업 수	비고						
신		▶ 사용자심사는 10개 이상의 샘플 과업 수 선정						
규	10개 이상	▶ 모바일 웹은 PC웹의 샘플링 50%로 적용						
갱	10/11 978	(단, 운영체제별로 각각 평가)						
신		ex) i-OS 57H, Android 57H						

※ 사용자 심사 과업 수는 사이트의 규모(대, 중, 소)에 따라 차등하여 심사하여야 함

② 과업 선정 기준

- 심사대상 사이트의 특성 상 중요한 서비스와 기능 중심으로 중복 없이 과업 선정
- ③ 사용자심사원 투입 기준
 - 전맹 시각장애, 저시력 시각장애, 지체(상지) 또는 뇌병변 장애의 3가지 장애유형 심사원이 독립적으로 심사 진행

□ 현장심사

- 외부에서 온라인으로 심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이트에 대해 전문가심사 및 사용자심사를 현장에서 진행하는 심사
 - ※ 현장심사를 진행하 사이트와 운영 중인 사이트가 다른 경우가 발견되면 인증 취소
 -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 에 따라 외부에서 심사할 수 없는 금융, 전자정부 사이트
 - ※ 심사원이 계정정보가 있더라도 심사대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현장 심사 진행
 - ② 외부로 테스트 계정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③ 인증기관에서 현장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현장심사 제한
- ① 운영 중인 서버와 기능・콘텐츠가 다른 테스트 또는 개발 서버인 경우

- ② 개발 과정 중 '설계', '구축' 단계와 같은 '시험' 단계 이전인 경우
- ③ 독립적 심사 공간과 장비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 심사 환경

ㅇ 전문가심사 웹 브라우저 및 버전 기준

구분	웹 브라우저	비고
PC 웹	과기정통부가 지정하는 웹 브라우저	▶ 최신 기술환경의 변화 및 웹 브라우저 이용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웹 브라우저 지정
모바일 웹	모바일 환경으로 User Agent 변경 가능한 브라우저 최신버전 또는 최신 OS가 설치된 스마트폰	▶ User Agent 설정은 최신 OS 설치가 가능한 기기

ㅇ 사용자심사 보조기기(스크린리더) 기준

구분	보조기기 (스크린리더)	비고
PC 웹	센스리더 최신버전 또는 죠스, NVDA 등 최신버전	▶ 기기 및 OS는 가장 최적화 된 접근성 환경을 제공하는 상태를 기준으로 함▶ 최소 하나 이상이 보조기기에서 과업 수행이 가능해야 함
모바일	i-OS Voice Over, Android Talk Back 등의 최신버전	▶ 기기 및 OS는 가장 최적화 된 접근성 환경을 제공하는 상태를 기준으로 함▶ 두 가지 모두 보조기기에서 과업 수행이 가능해야 함

ㅇ 사용자심사 모바일 단말 기준

단말	모바일 운영체제 및 브라우저	비고
최신iOS가 설치된	iOS 및 Safari(기본 브라우저) 최신 버전	Voiceover 사용
기기		Voiceover
최신Android OS가	Android 및 Android(기본 브라우저)	Talkback 등의 최신 버전
설치된 기기	최신 버전	Talkback 6 1 4 2 4 2

제7장 심사 기준

1. 전문가 심사

□ 전문가심사 합격 기준

ㅇ 항목별 준수율 : 24개의 검사항목 모두 평균 준수율 95%이상

〈항목별 준수율 예시〉

항	목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지에 수죽	항목별 준수율
1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0	0	0	0	0	0	0	0	0	0	10 / 10	100%
2	자막 제공	0	0	0	0	0	0	0	0	0	0	10 / 10	100%
3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0	0	0	0	0	0	0	0	0	0	10 / 10	100%
4	명확한 지시사항 제공	0	0	0	0	0	0	0	0	0	0	10 / 10	100%
5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	0	0	0	0	0	0	0	0	0	0	10 / 10	100%
6	자동재생 금지	0	0	0	0	0	0	0	0	0	0	10 / 10	100%
7	콘텐츠 간의 구분	0	0	0	0	0	0	0	0	0	0	10 / 10	100%
8-1	키보드 사용 보장(PC웹)	0	0	0	0	0	0	0	0	0	0	10 / 10	100%
8-2	누르기 동작 지원(모바일웹)	0	0	0	0	0	0	0	0	0	0	10 / 10	100%
9	초점 이동	0	0	0	0	0	0	0	0	0	0	10 / 10	100%
10	조작 가능	0	0	0	0	0	0	0	0	0	0	10 / 10	100%
11	응답시간 조절	0	0	0	0	0	0	0	0	0	0	10 / 10	100%
12	정지 기능 제공	0	0	0	0	0	0	0	0	0	0	10 / 10	100%
13	깜빡임과 번쩍임 사용 제한	0	0	0	0	0	0	0	0	0	0	10 / 10	100%
14	반복영역 건너뛰기	0	0	0	0	0	0	0	0	0	0	10 / 10	100%
15	제목 제공	0	0	0	0	0	0	0	0	0	0	10 / 10	100%
16	적절한 링크 텍스트	0	0	0	0	0	0	0	0	0	0	10 / 10	100%
17	기본 언어 표시	0	0	0	0	0	0	0	0	0	0	10 / 10	100%
18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0	0	0	0	0	0	0	0	0	0	10 / 10	100%
19	콘텐츠의 선형화	0	0	0	0	0	0	0	0	0	0	10 / 10	100%
20	표의 구성	0	0	0	0	0	0	0	0	0	0	10 / 10	100%
21	레이블 제공	0	0	0	0	0	0	0	0	0	0	10 / 10	100%
22	오류 정정	0	0	0	0	0	0	0	0	0	0	10 / 10	100%
23	마크업 오류 방지	0	0	0	0	0	0	0	0	0	0	10 / 10	100%
24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0	0	0	0	0	0	0	0	0	0	10 / 10	100%

<심사 지표 결과 표시 및 기준>

결과 구분	지표 기준	비고
합격(O)	합격(O)	오류 없음
합격(0)	권고(O)	권고 사항 있음
불합격(X)	불합격(X)	오류 있음

□ 전문가 심사 검사 항목

번호	세부평가항목	준수율 산정 방식	비고
1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심사대상페이지내의 $\left(\frac{\mathbb{C}$ 수한 페이지수} $\times 100\right)$	
2	자막 제공	심사대상페이지내의 $\left(rac{준수한콘텐츠수}{콘텐츠수} imes100 ight)$	샘플링 페이지 수 이내로 멀티미디어 제공 페이지 수집
3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4	명확한 지시사항 제공		
5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		
6	자동재생 금지		
7	콘텐츠 간의 구분		
8-1	키보드 사용 보장(PC웹)		
8-2	누르기 동작 지원(모바일웹)		
9	초점 이동		
10	조작 가능		
11	응답시간 조절		
12	정지 기능 제공	심사대상페이지내의 $\left(\frac{준수한 페이지수}{페이지수} \times 100\right)$	
13	깜빡임과 번쩍임 사용 제한	'급자대'용체의시대기(페이지수 ^100)	
14	반복영역 건너뛰기		
15	제목 제공		
16	적절한 링크 텍스트		
17	기본 언어 표시		
18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19	콘텐츠의 선형화		
20	표의 구성		
21	레이블 제공		
22	오류 정정		
23	마크업 오류 방지		
24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각 검사항목에서 검사	

□ 지표별 전문가심사 기준

	공통 사항	
중복 감점 기준	 ◎ 공통영역 등에서 동일한 콘텐츠가 여러 페이지에서 감점되는 경우 1페이지만 감점예) 푸터의 주소 대체 텍스트 오류 ◎ 하나의 오류가 다양한 검사항목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감점예) onfocus=this.blur()의 경우: 검사항목 7,8,16 동시 감점※ 반드시 동시에 오류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에 동시감점 적용 	
문법준수	◎ 심사가이드에서 설명되지 않은 경우 문서타입의 문법을 준용- 심사가이드에서 제시되지 않은 각 항목별 심사는 문서타입에 따른 문법에 따른다.	
명도대비(모바일)	◎ 명도대비평가는 <u>http://troy.labs.daum.net</u> 에서 보이는 화면을 CCA로 측정한다.	

원칙 1. 인식의 용이성(Perceivable)

항목 1.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지표 번호	1	지표명	적절한 대체텍스트 제공
준수 기준 ○ 의미 있는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에 그 의미나 용도를 동등하게 인식할 수 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한 경우에 준수한 것으로 인정			
	1-1		지 요소에 대해 alt 속성을 제공하지 않거나 내용을 대체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오타로
	1-2	○ 불릿이나 배경이미지 등 의미 없는 이미자 불필요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한 경우	i에 alt 속성을 제공하지 않거나 공백이 아닌
	1-3	<longdesc> 속성을 이용했으나 파일이 된 파일의 내용이 longdesc속성을 부여 하기 어려운 경우</longdesc>	연결되지 않은 경우 또는 longdesc로 연결 한 img가 가진 내용의 의미나 기능을 파악
	1-4	○ <area/> 요소나 <longdesc> 속성을 사 요소 자체에 alt 속성을 적절하게</longdesc>	용하였으나 area나 longdesc의 서술 대상인 제공하지 않은 경우
오류 유형	1-5	○ 이미지맵을 사용하여 조직의 관계나 프로세스 등 복잡한 이미지의 내용을 대체텍스트로 설명하였으나, 순서가 맞지 않거나 설명이 부족하여 원래의 이미지의 내용을 대신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1-6	○ img 요소의 대체텍스트를 title만으로 제공하는 경우	
	1-7	○ QR코드 등과 같이 시각적인 정보만으로 확인이 가능한 콘텐츠(기능)의 이동 주소 정보 등을 대체텍스트 또는 설명, 링크 등으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	
	1-8	○ 배경 이미지가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를 텍스트 형태의 정보로 제공 하지 않은 경우	
	1-9	○ 배경 이미지로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텍스트 형태의 정보로 제공하 있으나, 그 텍스트 정보를 보조기기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10			
화면에 표시된 이미지의 텍스트 정보와 대체텍스트가 동일하지 않더라 텐츠를 인식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경우는 접근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QR코드, CCTV, 자동 가입 방지 이미지(CAPTCHA) 등 실시간 영상 분체텍스트는 콘텐츠의 용도나 목적을 알 수 있도록 제공 용도나 목적만 대체텍스트를 제공하는 자동 가입 방지 이미지(CAPTC서는 음성, 캡챠, 문자 안내 등의 대체 수단을 제공해야 함 찾아오시는 길, 뉴스 사진과 같은 본문 이미지에 대하여 대체텍스트 제공하고, 본문에 설명을 제공하면 준수한 것으로 인정 대체 텍스트 제공을 위해 IR(Image Replacement)기법을 사용하고 그 나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는 접근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I(CAPTCHA) 등 실시간 영상 등에 대한 대 는 수 있도록 제공 자동 가입 방지 이미지(CAPTCHA)에 대해 수단을 제공해야 함 는 이미지에 대하여 대체텍스트를 빈값으로 는 것으로 인정	

항목 2	항목 2. (자막 제공)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 원고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 한다.		
지표 번호	2	지표명 자막 제공	
준수	○ 영상, 음성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동등하게 인식할 수 있는 자막, 원고 또는 수화를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2-1	○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대체수단(자막, 원고, =	수화 중 하나 이상)을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경우
오류	2-2	○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대체 수단의 내·	용을 불충분 또는 적절하지 않게 제공한 경우
유형	2-3	○ 사용자가 등록한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디 하지 않은 경우	배해 관리자가 대체 수단 입력 기능을 제공
세부	설명	** 하지 않은 경우 • 멀티미디어 콘텐츠 상의 텍스트에 대한 동등한 음성 또는 원고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 • 음성이 없는 동영상의 경우도 동영상이 표현 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대체 수단을 반드시 제공해야 준수한 것으로 인정 • 파일로 제공되는 영상, 음성 콘텐츠도 평가 대상에 포함(단, 파일로 제공되는 영상, 음성의 자막은 파일로 제공한 경우도 준수한 것으로 인정) • 원고는 페이지 내에서 보여지도록 제공해야 함 • 자막으로 인해 수화가 가리지 않도록 하고, 대체 콘텐츠(자막, 대본, 수화)와 영상을 같이 확인할 수 있도록 대체 콘텐츠를 멀티미디어 콘텐츠 인접한 위치에서 제공하여야 함 • 모바일 웹의 경우 파일로 제공되는 영상, 음성 콘텐츠를 지양하고, 모바일 기기에서 대체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권장 ▶ 원고를 제공할 경우 모바일 기기에서 화면과 원고를 함께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권장 ▶ 모바일 기기는 디바이스마다 화면의 크기가 다르므로 원고제공보다 닫힌 자막을	

항목 3	항목 3.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콘텐츠는 색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지표 번호	3	지표명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준수	기준	◎ 색을 배제하여도 인식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오류 유형	3-1	○ 색상만으로 내용을 구분하거나 인식하도록 제공된 콘텐츠(그래프, 차트, 지도, 필수 입 력항목 등)를 제공한 경우	
세부	설명	 것으로 인정 차트 등에 대해 동일한 데이터 기반으로 같이 대체 콘텐츠를 제공하면 준수한 것 색상만으로 구분되었지만 사용자가 직접 이해할 수 있는 경우는 대체 수단을 제공 	선택하여 알 수 있거나 주변정보를 통해

항목 4. (명확한 지시사항 제공) 지시사항은 모양, 크기, 위치, 방향, 색, 소리 등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지표 번호	4	지표명	명확한 지시사항 제공	
준수	기준	◎ 지시사항 정보를 특정 감각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감각을 통해 용도나 목적을 이해 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오류	4-1	○ 색, 크기, 모양, 방향 등 지시사항을 시각정보로만 제공한 경우		
유형	4-2	-2 ○ 소리 등 지시사항을 청각정보로만 제공한 경우		
세부설명 • 시각 및 청각을 테스트 하는 검사 콘텐츠, 또는 시각, 청각을 통한 게임 특수 목적의 콘텐츠는 예외		, 또는 시각, 청각을 통한 게임 콘텐츠 등		

항목 5.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 텍스트 콘텐츠와 배경 간의 명도 대비는 4.5대 1 이상이어야 한다.

지표 번호	5	지표명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대비	
○ 내비게이션(메뉴) 및 본문 콘텐츠에서 텍스트의 명도 대비가 4.5:1 이상이 준수 기준 또는 굵은 14pt 이상에서 3:1 이상이거나, 화면 확대가 가능하도록 구현한 3:1 이상일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		
	5-1	○ 일반 텍스트의 경우 보통 크기(18pt 미만, 족하지 않은 경우	또는 굵은 14pt 미만)의 텍스트가 4.5:1을 만	
오류	5-2	○ 일반 텍스트의 경우 텍스트의 크기가 18 3:1을 만족하지 않은 경우	3pt 이상, 또는 굵은 14pt 이상의 텍스트가	
5-3		○ 이미지 텍스트의 경우 폰트 종류와 상관없이 14pt 크기에 해당하는 18.66px 미만인 경우 4.5:1 이상을 만족하지 않은 경우나, 18.66px 이상인 경우 3:1 이상을 만족하지 않은 경우(굵은 14pt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세부	● 이 항목에서 이야기하는 텍스트는 화면상에서 정보를 텍스트로 읽을 수 있는 모경우를 말함(일반 텍스트 콘텐츠. 이미지로 만들어진 텍스트 콘텐츠 모두 포함) ● 텍스트 크기가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나 이미지 텍스트의 경우는 글 모양과 생 없이 Windows에서 14pt는 18.66px이고 18pt는 24px로 적용하며(MacOS는 px가 같음), 굵음의 여부와 상관 없이 14pt 이상은 3:1이상, 미만은 4.5:1이상의도대비를 제공하는 경우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 ► (Windows의 표준 해상도: 96dpi, MacOS의 표준 해상도: 72dpi, 평가 Windows의 기준으로 실시) ● 마우스 및 키보드 포커스에 의해 변경(Roll Over) 되는 경우 콘텐츠는 그 중 명도 대본 높은 것을 기준으로 평가 ● 색상테마 등을 이용하여 전체 웹사이트의 색상정보를 변경하여 준수한 경우 인 ● 본문 콘텐츠에 단순히 장식 목적으로만 사용한 텍스트, 로고 또는 상호와 같은 텍트 이미지, 사용할 수 없음을 표시하기 위하여 명도 대비를 낮춘 회색의 컨트롤이나 위 서식 등은 이 검사 항목의 적용을 받지 않음		로 만들어진 텍스트 콘텐츠 모두 포함) 이미지 텍스트의 경우는 글 모양과 상관 18pt는 24px로 적용하며(MacOS는 pt와 pt 이상은 3:1이상, 미만은 4.5:1이상의 명은 인정 MacOS의 표준 해상도: 72dpi, 평가는 Over) 되는 경우 콘텐츠는 그 중 명도 대비가 색상정보를 변경하여 준수한 경우 인정 용한 텍스트, 로고 또는 상호와 같은 텍스트 명도 대비를 낮춘 회색의 컨트롤이나 입력	

항목 6	항목 6. (자동재생 금지) 자동으로 소리가 재생되지 않아야 한다.			
지표 번호	6	지표명 자동재생 사용 금지		
준수	기준	◎ 소리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3초 이내 또는 바로 정지 할 수 있는 소리 콘텐츠를 사용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오류	6-1	○ 웹 페이지에서 자동적으로 재생되는 3초 이상의 배경음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		
유형	6-2	○ 마우스 오버 또는 키보드 초점을 받아 자동적으로 배경음이 3초 이상 실행되는 경우		
자동 소리 외에도 마우스 오버 또는 키보드 초점만으로 3초 이상 배경음 재생되는 경우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 자동적으로 재생되는 소리의 지속시간이 3초 이상이더라도 제어 수단이 최상단에 제공되는 경우는 준수한 것으로 인정 페이지 내에 자동으로 재생되는 배경음 콘텐츠외 아무런 콘텐츠도 없는 경우는 것으로 인정		정 3초 이상이더라도 제어 수단이 페이지의 . 인정		

원칙 2. 운용의 용이성(Operable)

항목 7	항목 7. (콘텐츠 간의 구분) 이웃한 콘텐츠는 구분될 수 있어야 한다.		
지표 번호	7	지표명	콘텐츠 간의 구분
준수	기준	◎ 이웃한 콘텐츠는 시각적으로 구분되도록 것으로 인정	충분한 간격을 두도록 구현한 경우 준수한
오류 유형	7-1	○ 이웃한 콘텐츠를 아래 1가지 방법 이상으로 구분하지 않은 경우 1-1) 테두리를 이용하여 구분함 1-2) 콘텐츠 사이에 시각적인 구분선을 삽입하여 구분함 1-3) 서로 다른 무늬를 이용하여 구분함 1-4) 콘텐츠 배경색 간의 명도대비(채도)를 달리하여 구분함 1-5) 줄 간격 및 글자 간격을 조절하여 구분함 1-6) 기타 콘텐츠를 시각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 등	
세부	설명	되도록 제공하면 하나의 콘텐츠라고 오	다른 무늬 등을 이용하여 시각적으로 구분 해하는 혼동을 줄일 수 있음 경색과의 명도 대비를 4.5:1이상으로 제공한

항목 8-1. (키보드 사용 보장) 모든 기능은 키보드만으로도 사용 할 수 있어야 한다.(PC웹)

지표 번호	8-1	지표명	키보드 사용 보장
준수	준수 기준 ◎ 모든 기능을 키보드로 접근 및 운용 가능하도록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하도록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오류 유형	8-1- 1	○ 키보드로 접근 및 운용이 불가능한 경우	
유형 1 • 마우스로 제어할 수 있는 요소는 키보드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함 • 지리정보(GIS)를 활용한 연산기능, 가상현실(VR), 포토샵의 붓칠(pain: 디바이스 의존적 컨트롤 기능은 예외로 인정하나 해당 콘텐츠를 건너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대체 수단에 접근 및 인식할 수 있도록 대체콘트 준수한 것으로 인정 • 스크롤 되는 콘텐츠는 키보드로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스크립트 사용으로 인한 키보드 함정은 오류로 간주 • 자바스크립트 이벤트 핸들러 중 화면낭독프로그램을 지원하지 않는		현실(VR), 포토샵의 붓칠(painting) 등 포인팅 인정하나 해당 콘텐츠를 건너뛰거나 동등한 및 인식할 수 있도록 대체콘텐츠가 제공되면 할 수 있어야 함	

항목 8-2. (누르기 동작 지원) 터치(touch) 기반 모바일 기기의 모든 컨트롤은 누르기 동작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모바일 웹)

지표 번호	8-2	지표명	누르기 동작 지원
준수	© 슬라이드(Slide), 끌기와 놓기(Drag and drop) 등의 복잡한 동작을 단순한 누르기 분 작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오류	8-2-1	○ 다중 누르기(Multi-touch) 동작을 다	내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유형	8-2-2	○ 슬라이드(Slide), 끌기와 놓기(Drag and drop) 등의 복잡한 동작을 단순한 누르기 동작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세부설명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동등하게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등의 보편	UI를 활용하는 것은 필요하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거나 해당 기능을 대체할 적 설계(Universal Design)를 적용 를 위해 PC웹과 같이 모든 기능을 키보드로 접근

항목 9. (초점 이동) 키보드에 의한 초점은 논리적으로 이동해야 하며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지표 번호	9	지표명	초점 이동	
준수 기준		○ 운용 가능한 개체(링크, 버튼, 서식 등)들여 논리적 순서로 이동되는 경우 준수한 것으		
	9-1	○ 초점의 이동순서가 논리적이지 않으며 🤄	○ 초점의 이동순서가 논리적이지 않으며 일관성이 없는 경우	
	9-2	○ 초점 또는 키보드의 위치를 나타내는 요	소가 시각적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오류	9-3	○ 텍스트 등 운용할 수 없는 요소에 초점(기 되는 경우	
유형	9-4	○ 좌·우 쓸기(이전항목, 다음 항목)동작을 ³ 으며 일관성이 없는 경우	할 경우 초점의 이동순서가 논리적이지 않	
	9-5	○ 화면에 보이지 않거나 의미 없는 개체에 초점이 이동되는 경우		
세부설명		순방향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이용에 페이지 로딩 시, 제공되는 화면을 가리는 한 접근되고 닫을 수 있도록 구현한 경우에 사용자 운용에 의해 레이어 팝업이 제공 팝업 자체 또는 첫번째 콘텐츠가 되도록 팝업 제공 전의 콘텐츠 또는 영역으로 초점 스크립트 사용으로 인한 비논리적 이동은 초점은 점선(Outline-Style:dotted;) 형태가 시각적으로 구분될 수 있으면 준수한 것 모바일 웹에서의 초점은 화면낭독프로 (accessable focus) 임의 접근이 가능하다 없는 순서로 이동되는 콘텐츠는 예측가능 오류로 간주 초기초점이 검색 사이트의 검색 창,로그	레이어 팝업 또는 모달창은 가장 먼저 초점이 한국수한 것으로 인정 당되는 경우 다음 초점 이동은 해당 레이어 구현하고, 레이어 팝업을 닫을 경우 레이어 함이 복귀되도록 구현해야 준수한 것으로 인정은 오류로 간주 가 아니더라도 롤오버, 반전, 실선, 밑줄 등은으로 인정 보그램을 이용하기 위한 초점을 의미하며 하라도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거나 일관성이라고 일관성 있는 순서로 이동 되지 않으면 되인 페이지의 아이디 입력 창 등 주목적에 반되게 이동하는 경우는 준수한 것으로 인정	

항목 10	항목 10. (조작 가능) 사용자 입력 및 컨트롤은 조작 가능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지표 번호	10	지표명 조작 가능			
○ 웹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이웃한 컨트롤들은 개별적으로 선택하고 시 준수 기준 대각선 길이가 6.0mm 이상의 크기와 컨트롤의 안쪽 여백이 1픽셀 이상을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02	10-1	○ 컨트롤의 크기가 대각선으로 6.0mm 이상 제공하지 않은 경우			
오류 유형	10-2	○ 링크, 사용자 입력, 기타 컨트롤의 테두리 않은 경우	안쪽으로 1픽셀 이상의 여백을 제공하지		
세부설명		명 • 4인치(해상도 1136*640)의 단말 기준으로 6mm를 측정해야 함			

항목 11. (응답시간 조절) 시간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응답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지표 번호 11 지표명 응답시간 조절 ◎ 시간제한 콘텐츠는 배제하되, 불가피할 경우 콘텐츠의 응답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경우 준수 기준 준수한 것으로 인정 ○ 시간제한이 있는 콘텐츠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11-1 오류 유형 11-2 ○ 시간제한을 해제 또는 연장하는 방법에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 시간제한에 대한 연장 또는 정지 방법과 이에 대한 안내는 최소 20초 이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제공하지 않는 경우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 • 시간제한에 대한 연장 방법은 10배 이상의 시간을 제공해야 함 세부설명 • 경매나 실시간 게임, 듣기평가용 콘텐츠 등과 같이 원천적으로 콘텐츠의 이용에 따르는 시간 조절을 허용할 수 없는 콘텐츠는 예외로 인정 • 검사대상은 자동전환 페이지(Redirection page), 제한시간 연장, 제한시간 만료 경고 등이 해당됨

항목 12. (정지 기능 제곳)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는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지표 번호 12 지표명 정지 기능 제공 ◎ 스크롤 및 자동 갱신되는 콘텐츠는 배제하되, 불가피할 경우 콘텐츠를 제어할 수 있 준수 기준 도록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12-1 ○ 시간에 따라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에 정지, 이전, 다음 기능이 없는 경우 오류 ○ 시간에 따라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를 마우스와 키보드 또는 터치로 제어 불가 유형 12-2 능한 경우 • 정지, 이전, 다음을 반드시 버튼으로 제공하지 않아도 동등한 기능을 제공하면 준수한 것으로 인정(정지 기능의 경우, 마우스와 키보드 초점을 받고 있는 동안 콘텐츠가 변경되지 않아야 함) 세부설명 • 변경되는 콘텐츠의 전체 내용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대체 수단을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 주변에 "배너 전체 목록 보기" 등의 대체 수단을 해당 페이지 안에서 제공한 경우 • 검사대상은 자동적으로 스크롤되는 배너, 자동 변경되는 실시간 검색순위 등이 해당됨

항목 13. (깜빡임과 번쩍임 사용 제한) 초당 3~50회 주기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지표 번호 지표명 깜빡임과 번쩍임 사용 제한 13 ◎ 초당 3~50회 주기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회피할 수 준수 기준 있는 방법을 사전에 알리고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오류 ○ 사전 경고 없이 초당 3~50회 깜빡이는 콘텐츠가 존재할 경우 13-1 유형 • 깜빡임을 중단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했더라도 깜빡임과 번쩍임을 사전에 알리는 세부설명 정보를 제공해야 함 • 동영상 콘텐츠도 검사 대상

항목 14. (반복 영역 건너뛰기) 콘텐츠의 반복되는 영역은 건너뛸 수 있어야			l되는 영역은 건너뛸 수 있어야 한다.
지표 번호	14	지표명	반복 영역 건너뛰기
준수 기준		◎ 반복되는 영역을 건너뛸 수 있는 라 으로 인정	링크를 시각적으로 구현 및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
오류	14-1	○ 건너뛰기 링크를 제공하지 않은 경	경우
유형	14-2	○ 건너뛰기 링크의 제공방법이 적절	하지 않은 경우
O청		반복되는 대메뉴 등이 있는 혜더 전환 시 동일한 반복 영역이 있는 • 부적절한 건너뛰기 링크 제공 방법 1 키보드 운용 시에도 화면에 2 href 값 연결 등이 잘못되어 3 건너뛰는(도착) 위치가 부적? 4 화면 스크롤은 되나 실제 키 5 본문으로 바로 가는 건너뛰기 • 디자인의 특성상 건너뛰기 링크를 의하여 초점을 받으면 건너뛰기 링크를 의하여 초점을 받으면 건너뛰기 링크를 이하을 제공하였으나 제공 방법이 • 건너뛰기 링크가 연결이 잘못되어 • 건너뛰는(도착) 위치가 부적절하게 • 한면 스크롤은 되나 실제 키보드 를 판단 • 본문으로 바로 가는 건너뛰기 링크 것으로 판단 • 건너뛰기 링크가 키보드 운용 시에 않은 것으로 판단 • 모바일 웹의 경우 임의 접근 방식	보이지 않게 제공 된 경우 동작하지 않는 경우 털하게 지정된 경우 보드 초점은 이동되지 않는 경우 기 링크가 최상단에 제공되지 않은 경우 보이지 않도록 구현하더라도 키보드 내비게이션에

항목 15. (제목 제공) 페이지, 프레임, 콘텐츠 블록에는 적절한 제목을 제공해야 한다. 15 지표명 제목 제공 준수 기준 ◎ 페이지, 프레임, 콘텐츠 블록, 팝업창에 적절한 제목을 제공 시 준수한 것으로 인정 ○ 페이지에 제목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15-1 15-2 ○ 페이지에 제목을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 프레임 요소에 제목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15-3 오류 유형 15-4 ○ 프레임 요소에 제목을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15-5 ○ 콘텐츠 블록에 제목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 콘텐츠 블록에 제목을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15-6 • 부적절한 페이지 제목의 예시 1 페이지 내용과 다른 제목을 제공한 경우 2 | 동일한 페이지 제목이 존재하는 경우 3 │ 페이지 제목 분류가 더 가능함에도 상위 범주로 제목을 제공한 경우 페이지 제목에 2개이상 반복되는 특수문자를 사용한 경우 세부설명 • 단, 페이지 제목 분류가 더 가능하더라도 한 페이지로 구성된 탭메뉴와 같이 사실상 한 페이지인 경우 상위 범주로 페이지 제목을 제공해도 준수한 것으로 인정 • 내용 또는 기능이 없는 프레임에도 "빈프레임", "내용없음"과 같이 title을 제공해야 함 • 콘텐츠 블록 제목은 헤딩(Headings) 요소 사용 및 레벨 구조화를 권장하되, 다른 요소를 사용한 구분 또는 WAI-ARIA 기법 등도 준수한 것으로 인정 • 콘텐츠 블록 제목은 display:none;, visibility:hidden;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숨겨야 하는 경우 position 기법을 사용하여 제공하도록 함

항목 16. (적절한 링크 텍스트) 링크 텍스트는 용도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지표 번호	16	지표명	적절한 링크 텍스트
준수 기준		◎ 링크 텍스트의 용도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오류 유형	16-1	○ 목적이나 용도를 알기 어려운 링크 텍스트를 제공한 경우	
세부설명		• '확인', '취소', '이전', '다음', '다운로드', '상세보기', '더보기' 등과 같이 링크의 목적을 논리적 순서나 맥락을 통해 이해할 수 있으면 인정	
		• 링크 텍스트를 단순히 URL경로로만 제공한 경우 주변 맥락을 통해 링크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으면 인정	
		• 용도나 목적을 이해할 수 없는 빈 링	크 텍스트를 제공한 경우 오류로 간주

원칙 3. 이해의 용이성(Understandable)

항목 17. (기본 언어 표시)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명시해야 한다.

- '			, ,, ,		, _ , , , _ ,	
지표 번호	17		지표명		기본 언어 표시	
준수 기준		◎ 기본 언어 표시 속성을 사용하여 언어를 명시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오류 17-1 ○ 문서 타입에 맞는 기본언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지 않은 경우		
유형	17-2	○ 문서 타입에 맞는 기본언어를 적절하지 않게 명시한 경우				
			• 기본 언어 표시는 Doctype에 맞는 속성을 사용하여 ISO 639-1에서 지정한 두 글자로 된 언어 코드를 사용해야 함			
세부	설명		HTML 4.01 / HTML 5		<html lang="ko"></html>	
			XHTML 1.0	<	ntml xml:lang="ko" lang="ko" >	
			XHTML 1.1		<html xml:lang="ko"></html>	

항목 18.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기능(새 창, 초점 변화 등)은 실행되지 않아야 한다.

지표 번호	18	지표명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준수 기준		◎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기능이 실행되지 않도록 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18-1		○ 사용자가 실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측하지 않은 새 창이 열리는 경우		
오류	18-2	○ 웹 페이지 시작 시, 새 창 또는 화면을 기	가리는 레이어 팝업을 제공하는 경우	
오ㅠ 유형	18-3	○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초점 변화나	기능이 발생되어 맥락상 불편을 주는 경우	
	18-4	○ 입력 서식의 값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거나 현재 페이지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는 경우.		
세부설명		초점 이동, 선택 및 입력 방해 등이 별 • 텍스트 입력 서식 간 자동 초점 이동 돌아 갈 수 있거나 수정 방법을 제공함 • 오류정정을 위한 자동 초점 변경은 여 • 로만 새 창을 알함 • 사용자 운용에 의해 레이어 팝업을 열어 않으면 감점 ► '닫기'의 기능이 '확인', '취소' 등으로	기능(autofocus)은 이전 서식으로 초점을 되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항목 19	항목 19. (콘텐츠의 선형화) 콘텐츠는 논리적인 순서로 제공해야 한다.				
지표 번호	19	지표명 콘텐츠의 선형화			
준수	기준	◎ 콘텐츠의 순서가 논리적으로 선형화되	어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오류	19-1	○ 콘텐츠의 순서를 논리적으로 제공하지	않아 전후 맥락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		
유형	19-2	○ 콘텐츠의 구조를 논리적으로 제공하지	않아 주종 관계를 이해할 수 없는 경우		
세부설명		 제목과 내용 사이에 관련 없는 콘텐츠 기능으로 연결했다면 논리적인 순서 탭 내용들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제목으로 아님) 계층 구조가 존재하는 콘텐츠(예: 2단 	호를 포함하고 있다면 17-1 유형의 오류 호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제목과 내용을 앵커 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예: 탭 링크 목록과 과 내용이 앵커 기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계 이상의 깊이를 가진 메뉴)에 계층 구조를 li, ol>li>ol>li, hx+ul, hx+ol, dt+dd 등 이에		

항목 20. (표의 구성) 표는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야 한다.			게 구성해야 한다.		
지표 번호	20	지표명 표의 구성			
준수 기준		◎ 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20-1 ○ 표의 제목과 요약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하지 않은 경우		
	20-2	○ 표의 제목과 요약정보가 불충	분하거나 적절하게 제공되지 않은 경우		
오류 유형	20-3	○ 제목 셀과 내용 셀을 구분하지 않거나 잘못 구분한 경우			
11 0	20-4	○ 다단 병합 등 복잡한 표를 제공 시 headers, id 속성을 통해 제목 셀과 내용 셀을 연결하지 않은 경우			
	20-5	○ 표의 정보를 이해하기 어려운 중첩 표(표 안의 표)를 넣어 정보를 제공한 경우			
세부	● 데이터테이블의 제목과 요약정보는 문서타입에 맞는 방법으로 모두 제공해야 하다 제목과 요약정보는 동일하게 제공하지 않아야 함 ● 데이터 테이블은 자료들(텍스트, 숫자, 그림 등) 간의 논리적인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표를 사용한 경우를 말함 ● HTML5에서 summary는 존재하지 않는 속성이므로 사용할 수 없으며, <caption <caption="" ●="" 것으로="" 구조,="" 등의="" 방법="" 안에="" 요소="" 요약,="" 원칙적으로="" 인정="" 정보를="" 제공하면="" 제목을="" 준수를="" 탐색="" 포함하여="" 표의="">요소와 summary 속성을 모두 사용해야 하며, 이 중 하이상 적절히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 제목 셀 및 내용 셀의 다단, 병합 등 복잡한 표를 제공 시 scope 속성을 사용하게 공하면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수정 권장</caption>				

 데이터테이블은 자료들(텍스트, 숫자, 그림 등) 간의 논리적인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표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며, 표의 형식을 제거하고 선형화 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배치용(레이아웃용) 테이블은 화면 배치를 위해 작성된 경우를 말하며, 표의 형식을 제거하고 선형화했을 때 이해 가능한 경우에 해당 배치용 테이블에는 , <caption> 요소, summary 속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caption>
• <caption>요소는 ddisplay:none; 등과 같이 화면낭독기에서 읽히지 않는 방식으</caption>
로 숨기지 않아야 하며, 숨겨야 하는 경우 position 기법을 사용하여 제공하도록 함

항목 2	항목 21. (레이블 제공) 입력 서식에는 대응하는 레이블을 제공해야 한다.					
지표 번호	21	지표명	레이블 제공			
준수	기준	◎ 입력 서식에 대응하는 레이블을 제공한	·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21-1 O <input/> , <textarea>, <select> 요소에 1:1 대응하는 <label>요소 또는 title 설
제공하지 않거나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td><td></td></tr><tr><td>유형</td><td>21-2</td><td colspan=3>○ <lable> 텍스트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label> 생략 후 title 속성만 사용한 경우</td></tr><tr><td></td><td>21-3</td><td colspan=3>○ <input>의 id와 <label>의 for가 다르거나, 페이지 안에 같은 id가 있는 경우</td></tr><tr><td colspan=2>세부설명</td><td>title 속성 사용은 필수가 아니므로 오르
• 단, 화면상에 연결할 레이블이 표현되는
• 서식 요소가 아닌 요소로 서식 모양
등을 사용하여 레이블 역할을 하도록</td><td colspan=2> <input type="image hidden submit button reset"> 요소의 <label> 또는 title 속성 사용은 필수가 아니므로 오류 유형 19-1 으로부터 예외를 적용해야 함 단, 화면상에 연결할 레이블이 표현되는 경우는 반드시 <label>로 연결하는 것을 권장 서식 요소가 아닌 요소로 서식 모양 및 기능을 구현한 경우 title 속성 WAI-ARIA 등을 사용하여 레이블 역할을 하도록 구현해야 함 <select> 요소의 첫 번째 <option>이 레이블 역할을 대신하는 경우라도 <label> </td></tr></tbody></table></textarea>						

항목 2	2. (오류	F 정정) 입력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지표 번호	22	지표명 오류 정정			
준수 기준		◎ 입력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22-1	○ 입력 오류 발생 시, 오류 원인 및 내용을 적절한 설명 텍스트로 알려주지 않는거나 적 절하지 않은 경우			
오류 유형	22-2	○ 입력 오류 발생 시, 정정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πδ	22-3	○ 오류 정보 확인 시, 해당 입력 서식으로 초점이 이동하지 않는 경우			
	22-4	○ 입력 오류 발생 시 입력 내용이 모두 사라지는 경우			
22-4 세부설명		 오류 정정에 대한 정보 제공 방식은 ajax 등을 사용해 각 서식 입력 시 마다 정보를 주거나, 버튼을 제공하는 방법, 최종 전송 시 알림을 제공하는 방법 등을 적용하더라도 오류가 난 입력 서식으로 초점이 이동할 수 있도록 링크나 기능을 제공해야준수한 것으로 인정 오류가 있는 곳에만 오류 표시를 하면 전맹이나 저시력자는 오류가 난 곳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어디에 오류가 있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오류의 내용을 먼저 텍스트로설명해주거나, 프로그램을 통해 오류가 난 위치에 도달하도록 하고, 오류의 내용을설명해 주어야 함 은행의 뱅킹과 같이 입력 값의 형식, 범위에 대한 유효성을 인정받고 이미 전송된값에 대하여 외부 시스템으로부터 처리 가능 여부를 검증 받는 경우는 예외 			
		(단, 입력 중인 화면에서 값의 누락, 형식 및 범위의 유효성 오류 등은 정정 방법을 제공해 주어야 함)			

원칙 4. 견고성(Robust)

항목 23. (마크업 오류 방지) 마크업 언어의 요소는 열고 닫음, 중첩 관계 및 속성 선언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

지표 번호	23	지표명	마크업 오류 방지	
준수 기준		◎ 마크업 언어 요소의 열고 닫음, 중첩 관계 및 속성 선언에 오류 없이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23-1	○ 태그의 열고 닫음 오류		
오류	23-2	○ 태그의 중첩 오류		
유형	23-3	○ 중복 선언된 속성 오류		
	23-4	○ 한 페이지 안에 동일한 ID 값이 존재하는 경우		
세부설명		• 위에 언급된 항목 이외의 표준문법 오류 이외에도 모두 준수하도록 권장		

항목 24.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콘텐츠에 포함된 웹 애플리케이션은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

지표 번호	24	지표명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준수 기준		◎ 웹 애플리케이션의 자체 접근성을 준수하였거나 대체 콘텐츠를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오류 유형	24-1	○ 웹 애플리케이션이 자체적인 접근성이 없으며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체 콘텐츠가 존재하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게 제공한 경우			
세부설명		•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자체 접근성은 인식의 용이성, 운용의 용이성, 이해의 용이성 원칙에 따른 접근성 준수 기준을 의미			

2. 사용자 심사

- □ 사용자심사 합격 기준
 - 최종 결과 : 모든 장애 유형의 과업 성공률 100%인 경우 합격
 - 과업별 결과 : 15분 이내 과업 수행에 성공해야 함
 - 과업 수행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와 불편 사항 또는 권고 사항만 있는 경우에만 합격으로, 결국 모든 과업이 성공해야 최종 합격이 됨
 - 모바일 웹 접근성에서 과업 수는 PC웹 기준의 50%(단, 2종의 OS에서 테스트)
 - 모바일 운영체제별 과업 결과 : i-OS와 Android에서 수행하고 임 의접근 방식으로 평가하여 15분 이내 성공해야 함
 - 사용자심사에서 '터치하여 탐색'은 순차접근이 아닌 임의접근 방 식으로 심사

<과업 결과 표시 및 기준>

결과 구분	과업 기준	비고
\$\.74(0)	성공(O)	문제없이 수행 가능
합격(O)	권고(O)	수행 가능하나 불편 사항 또는 권고 사항 있음
불합격(X)	실패(X)	오류가 있어 과업 수행이 불가능

□ 심사 장애 유형 및 특성

장애유형	등급 및 조건	구분	환경 및 특성	비고
전맹 시각장애		PC 웹	PC화면 낭독프로그램 사용, 키보드만 사용	본 가이드에서 정한 2가지 화면 낭독기 중 중 하나이상 성공 해야 인정
시작장에		모바일웹	모바일 스크린리더 사용, 모든 손가락 사용	Voiceover, Talkback 등으로 임의터치방식 진행
저시력		PC 웹	확대 및 고대비 기능 사용, 마우스, 키보드 사용	화면 확대, 반전, 고대비 등 사용
시각장애		모바일웹	확대 및 고대비 기능 사용, 모든 손가락 사용	와한 꼭대, 한잔, 꼬대미 중 사용
		PC 웹	키보드만 사용	-
지체(상지) 또는 뇌병변 장애		모바일웹	하나의 터치수단 사용 (예: 한 손가락만 사용)	터치방식으로 진행 또는 화면 낭독기 환경에서 대체 수단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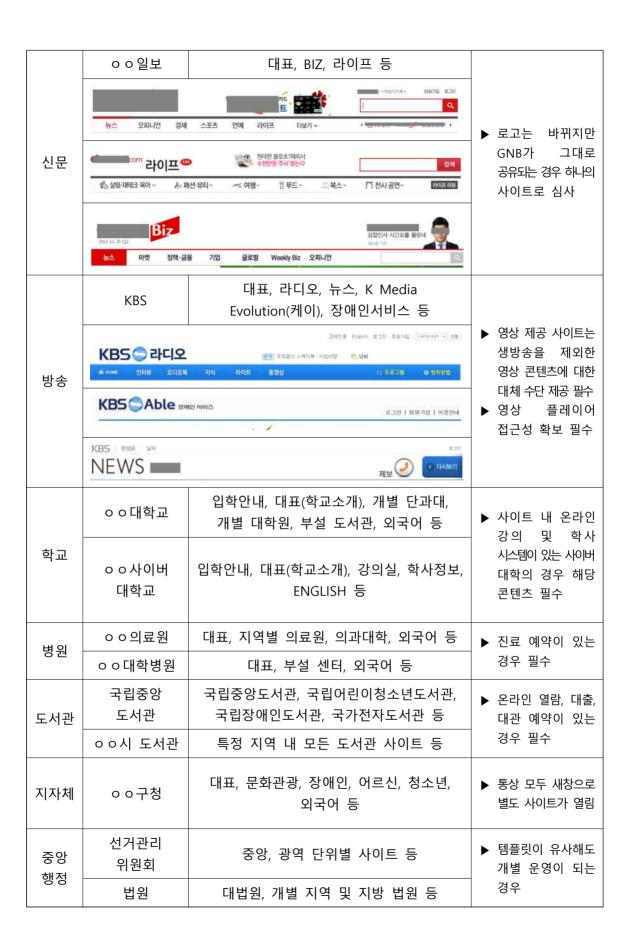
□ 사용자심사 지표

번호	과업 예시 (사이트마다 특성을 고려하여 과업 설정)	성공률 산정 방식	
1	회원가입을 해보세요.		
2	로그인과 로그아웃을 해보세요.	성공한 과업 심사 대상 과업	
3	회원 정보를 수정해보세요.(주소, 전화번호)		
4	사이트맵을 이용하여 민원업무서식을 찾아보세요. 별로 정해진 시간 내에 ·		
5	자유게시판으로 이동하여 첫 번째 게시물을 읽어보세요.		

[붙임1] 별도 사이트 예시 및 심사 범위 (예시)

〈별도 사이트 예시 및 심사 범위 참고사항〉





포털	네이버	메일, 카페, 블로그, 지식IN, 쇼핑, 사전, 뉴스, 금융, 지도, 영화, 뮤직, 책 등	▶ 대메뉴의 각 메뉴가
	다음	카페, 메일, 블로그, 쇼핑·소셜, 뉴스, 증권, 부동산, 사전, 영화, 뮤직, 만화, TV팟 등	서비스단위로 별도 사이트로 심사
기타	허브 포털 및 검색 엔진	외부 사이트의 콘텐츠들을 모으거나 연결 시켜주는 허브 사이트, 특정 목적의 자료나 정보만을 검색 해주는 검색 엔진 사이트	▶ 해당 서비스 연결 전까지만 심사

[붙임2] 핵심 서비스 대체 수단 (참고사항)

- 이 (외부 지도서비스 제공) 웹 사이트에서 외부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이 방문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하단에 대체텍스트로 주소를 제공하면 가능
- 이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대체 수단 제공 시, 웹 내에서 해결되지 않는 방식의 대체 수단은 인정하지 않음
 - 예약/예매 기능에 대한 전화 예약/예매 대체는 대체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음
 - 인터넷 결제서비스 제공 시 계좌를 통한 이체 등 대체 수단은 인정되지 않음